

## 안전보건공단 산하기관 연락처 및 관할지역

지도원	전화번호	관할지역
서울지역본부	02-6711-2832,6	서울특별시(강남지역, 강북지역 중 광진구, 성동구)
서울북부지사	02-3783-8313	서울특별시 강북지역 (광진구, 성동구 제외)
강원지사	033-815-1042	강원도(영월, 정선, 평창, 강릉, 속초, 동해, 고성, 양양, 삼척, 태백, 철원군 제외) 경기도 가평
강원동부지사	033-820-2580	강원도(강릉, 속초, 동해, 삼척, 태백, 고성, 양양, 정선, 영월, 평창)
부산지역본부	051-520-0570	부산광역시 전역
울산지사	052-226-0552	울산광역시 전역
경남지사	055-269-0555	경상남도(김해, 밀양, 양산시 제외)
경남동부지사	055-371-7553	경상남도(김해, 밀양, 양산)
대구지역본부	053-609-0520	대구광역시(중구, 동구, 남구, 수성구, 달성군), 경상북도(영천시, 경산시, 청도군)
대구서부지사	053-650-6832	대구광역시(서구, 북구, 달서구), 경상북도 고령군, 군위군, 성주군, 칠곡군(석적읍 중리 내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)
경북동부지사	054-271-2052	경상북도(포항, 경주, 영덕, 울진, 울릉)
경북북부지사	054-478-8031	경상북도(구미, 김천, 영주, 상주, 문경, 봉화, 안동, 의성, 예천, 청송, 영양, 칠곡군 석적면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)
중부지역본부	032-510-0524	인천광역시(강화, 웅진 포함)
경기남부지사	031-259-7154	경기도(수원, 평택, 오산, 용인, 안성, 화성)
경기북부지사	031-828-1912,9	경기도 한강이북지역(가평군 제외), 강원도 철원
경기서부지사	031-481-7526	경기도(안산, 시흥, 광명, 안양, 과천, 의왕, 군포)
경기동부지사	031-785-3321	경기도(여주, 광주, 이천, 하남, 양평, 성남)
부천지사	032-680-6533	경기도(부천, 김포)
광주지역본부	062-949-8741,7	광주광역시, 전라남도(나주, 담양, 영광, 장성, 함평, 화순, 구례, 곡성)
전북지사	063-240-8531	전라북도 전역(군산, 익산, 김제, 부안, 고창 제외)
전북서부지사	063-460-3625	전라북도(군산, 익산, 김제, 부안, 고창)
전남동부지사	061-689-4953	전라남도(여수, 순천, 광양, 고흥, 보성)
전남서부지사	061-288-8702	전라남도(목포, 강진, 장흥, 신안, 진도, 해남, 완도, 영암, 무안군)
제주지사	064-797-7502	제주도 전역
대전지역본부	042-620-5641	대전광역시, 충청남도(계룡, 공주, 논산, 금산, 연기, 보령, 서천, 청양, 부여, 서산, 홍성, 태안), 세종특별자치시
충북지사	043-230-7153	충청북도 전역
충남지사	041-570-3423	충청남도(천안, 아산, 예산, 당진)

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(북정동)  
Tel. 052-7030-500 Fax. 052-7030-312 [www.kosha.or.kr](http://www.kosha.or.kr)

## 안전보건 진단기관 연락처

진단기관	분야	소재지	지정일	지정관서
안전보건공단	종합	울산 중구 종가로400 (☎052-7030-500)	1990.11.07	-
한국가스안전공사	안전	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종로 1390(대야동) 332-1번지 (☎043-750-1000)	2003.01.21	중부청
(사)대한산업안전협회	안전 (건설포함)	서울 구로구 공원로70 (☎02-869-7873)	2001.07.01	서울청
(사)한국안전기술협회	안전 (건설포함)	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62 고진법조빌딩409호 (☎031-431-3122)	2010.11.04.	중부청
(재)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	안전	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(☎02-801-0300)	2012.06.22	서울청
(주)대한안전기술연구원	안전	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95 602호 (☎031-411-8410)	2013.08.16	중부청
(사)한국안전보건협회	안전	경기 광명시 원노온사로 65 (☎02-3666-9777)	2013.10.07	중부청
한국안전기술지원단	안전	부산광역시북구시랑로51-1 경이하이츠빌라A동 (☎051-332-2114)	2013.10.18	부산청
한국산업안전관리원(주)	안전	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55 402동403호(고잔동,한양빌딩) (☎031-414-0723)	2014.02.26	중부청
(사)산업안전보건진흥원	안전	서울 금천구 벚꽃로122, 3층 (독산동, 진성빌딩) (☎02-804-7900)	2014.07.03	서울청
한국방재안전보건환경기술원(주)	안전	서울시관악과봉천로4072층 (봉천동덕운빌딩) (☎02-814-8225)	2014.08.07	서울청
한국산업안전검사(주)	안전	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58번길 75 (☎031-252-9411)	2014.10.27	중부청
(사)대한산업보건협회	보건	서울 서초구 효령로179 (☎02-586-2412)	2005.10.28	서울청
(주)한국산업보건연구소	보건	경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152번길40 수원첨단벤처밸리607 (☎031-296-1014)	2013.08.07	중부청
한국산업위생협회	보건	경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132번길 33 (고색동휴먼스카이밸리1010-1011호) (☎070-8680-9766)	2013.09.16	중부청

※ 안전보건공단은 민간 전문진단기관과 협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

재해없는 안전한  
사업장을  
안전보건공단의  
안전보건진단이  
만들어 드립니다.



## 안전보건진단이란?

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인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조사·평가하는 제도

'13년 진단사업장에 대한 '14년 재해감소 성과는  
재해자 49.4% 및 재해율 53.3% 감소



## 진단1 | 안전보건진단의 정의

### 1 진단주체에 따른 분류

#### 자율진단

사업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진단 기관에 신청하는 진단

#### 명령진단

중대재해발생사업장, 추락·폭발·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지방관서에서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진단결과를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진단

#### ■ 명령진단 대상사업장의 선정기준(시행규칙 제126조제1항 및 제131조제7항)

-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(동종업종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 2년간 초과)
-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· 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
-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발생률의 2배 이상인 사업장\*\*
-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
- 작업환경 불량, 화재 · 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
- 추락 · 폭발 ·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

### 2 진단내용에 따른 분류

#### 종합진단

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진단

#### 안전진단

안전분야에 대해 위험성평가기법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 등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

#### 보건진단

보건분야에 대해 위험성평가기법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 등의 유해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

#### 시스템진단

사업장 등의 재해발생 보고 및 기록, 안전보건조직 및 직무 이행 실태, 도급사업장 등의 안전보건조치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

#### ■ 업무처리절차



■ 진단보고서 제출기한 : 진단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

## 진단2 | 안전보건진단의 법규 및 사업종류 · 종합진단 일수, 진단참여 일수

### 3 안전보건진단의 관련법규 및 진단비용

#### 작업중지 등(법 제26조)

중대재해가 발생시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안전 · 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

#### 유해작업 도급 금지(법 제28조)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안전보건 진단에 준하는 평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(하도급을 포함한다) 금지

(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)

#### 안전보건진단(법 제49조)

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발생사업장, 추락 · 폭발 · 붕괴 등 재해발생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안전보건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지방 관서에서 진단결과를 검토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

(1천만원 이하 과태료)

#### 안전보건개선계획(법 제50조)

재해율이 높거나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등 종합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 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지방관서에서 검토 · 승인 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· 지도

(1천만원 이하 과태료)

#### ■ 진단비용

진단일수 × (직접인건비+직접경비+제경비+기술료=약 80~100만원/인 · 일)

### 4 사업종류 및 최소 종합진단 일수 및 참여일수

#### ■ 최소 종합진단 일수

근로자수	고위험	중위험	저위험
50인미만	15	11	7
50인이상 ~ 100인미만	30	21	15
100인이상 ~ 300인미만	50	35	25
300인이상 ~ 1,000인미만	100	70	49
1,000인이상 ~ 5,000인미만	200	140	98
5,000인이상 ~ 10,000인미만	400	280	196
10,000인이상 ~ 20,000인미만	600	420	294
20,000인이상	1,000	700	490

※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

※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하여야 하나, 종합진단이 아니거나 자율진단인 경우는 진단일수를 조정할 수 있음

#### ■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

위험도	사업 종류			
	고위험	중위험	저위험	부위
고위험	석탄광업, 채석업, 어업, 금속 및 비금속 광업, 석회석광업, 임업, 기타 광업, 화물자동차운수업,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,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, 건설업, 금속재료품 제조업, 공정안전보고서(PSM) 심사 · 확인 사업장			

위생 및 유사서비스업,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, 수상운수업,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, 기타제조업, 시멘트 제조업, 농업, 선박건조 및 수리업, 펄프 · 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, 고무제품 제조업,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 · 퀵서비스업,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(을), 기계기구 제조업,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, 식료품제조업, 도금업, 여객자동차운수업,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, 건물등의 중합판리사업, 화학제품 제조업,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, 유리 제조업, 수제품 제조업, 창고업,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제제품 제조업,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(갑), 신문 · 화폐발행, 출판업 및 인쇄업, 전기기계기구 제조업, 통신업, 금속제련업, 오락 · 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, 기타의 각종사업, 도 ·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				
--	--	--	--	--

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, 계량기 · 광학기계 · 기타정밀 기구 제조업, 전기 · 가스 · 증기 · 수도사업, 운수관련 서비스업, 부동산업 및 임대업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담당제조업, 철도궤도 및 삽도운수업, 전자제품 제조업, 항공운수업, 전문기술서비스업,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, 교육서비스업, 금융 및 보험업				
---	--	--	--	--

※ 위험도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(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 및 사업종류의 예시, 고용 노동부고시)에 따라 분류함				
--	--	--	--	--

#### ■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

진단일수	100이상	200이상	300이상	500이상	1000이상	3000이상
기술자 등급	특급 50이상	특급 100이상	특급 150이상	기술사 300이상	기술사 100이상	

※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준수를 제고함

## 진단3 |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

### 5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

#### 종류

종류	내용
종합진단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영 · 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</li> <li>안전 · 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</li> <li>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· 운영, 명예감독관의 역할 등</li> <li>인천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</li> </ol> </li> <li>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(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)</li> <li>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</li> <li>유해위험 예방조치의 적정성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계 · 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</li> <li>폭발성,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</li> <li>전기, 열,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</li> <li>굴착, 채석, 하역, 벌목, 운송, 조작, 운반, 해체, 중량물 취급,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</li> <li>주거할 위험이 있는 장소, 토사 · 구축물 등이 붕괴할 위험이 있는 장소,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,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에 따른 조치를 마련하는 경우</li> <li>원자료 · 가스 · 증기 · 부진 · 흡(fume) · 미스트(mist) · 산결 · 페 등에 의한 건강장해</li> <li>방사선 · 유해광선 · 고온 · 저온 · 초음파 · 소음 · 진동 · 이성간접 등에 의한 건강장해</li> <li>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· 액체 또는 씨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</li> <li>계측감시(計測監視), 컴퓨터 단말기 조작, 정밀공작 등에 의한 건강장해</li> <li>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화기 · 채광 · 조명 · 보온 · 방습 ·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</li> </ol> </li> </ol> </li> <li>보호구, 안전 · 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</li> <li>유해물질의 사용 · 보관 · 저장,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·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</li> <li>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 · 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li> <li>자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</li> </ol>
안전진단	종합진단 내용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, 제4호 내지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 및 제8호
보건진단	종합진단 내용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, 제4호 내지 제5호 중 보건 관련 사항 및 제6호 내지 제8호